

기금운영 규정

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정관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 이외에 기금증식 등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기 자금(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과 장기 자금으로 분류한다.
 2. “현금성 자금”이라 함은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
 3. “유동성 자금”이라 함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
 4. “장기 자금”이라 함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
 5. “기금관리자”라 함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개정 2021. 12. 21.)

제3조(운용방법) 여유자금은 정관 제4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제4조(여유자금 운용계획수립) ① 기금관리자는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까지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방향
2. 기금의 수지계획
3. 자산운용전략 및 배분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금융기관 등의 범위) 기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특수은행
2. 증권회사
3.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 종합금융회사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6.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연기금통합펀드

제6조(금융기관의 선정) ① 예치대상 금융기관은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 가급적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과도한 예금 유치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② 금융기관 예치는 선정된 금융기관의 본점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지점에 예치할 수 있다.

③ 기금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건전성, 자산규모,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상품의 선정)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금융상품은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및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예치기준) 여유자금의 예치는 최소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금별로 금융기관별 세부예치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도) 기금관리자는 기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허용위험도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연간 여유자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유가증권투자) ① 기금관리자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이를 연간 여유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자는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세부 투자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선량한 관리) ① 기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험관리) ① 기금관리자는 예탁상품에 대하여 투자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을 줄이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운용자산의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예탁자금을 회수하거나 예탁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자는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운영) 여유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여유자금운용정책에 관한 사항
2. 연간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유자금운용과 관련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